

#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: 2019. 9. .

제출자: 서초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존속기한 도래로 그 기한을 연장함.
- 나.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30만m<sup>2</sup>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금액을 납부받아 재원을 조성하고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 및 관리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여야 함.
- 다. 향후 우리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소각장 설치 등 장기적 폐기물처리계획 수립에 대비해 기금 유지 필요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당시(2010.3.22.) 10년이었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존속기한의 도래로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의거 존속기한을 5년 이내 범위인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함(안 제9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」 및  
동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타 :
- 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  - 2) 입법예고 : 2019. 7. 26. ~ 2019. 8. 15. (20일), (결과 : 의견없음)
  - 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 - 4) 부패영향 평가 : 원안동의
  - 5) 성별영향 분석평가 : 평가제외대상
  - 6) 지방재정계획위원회 심의 : 존속기한 연장 可
  - 7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 
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기금의 존속기간)”을 “(기금의 존속기한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기금의 존속기간)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하되, 필요 시에는 운용기간을 연장 또는 축소 할 수 있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9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